

환경보건안전방침

LG에너지솔루션은 환경보건안전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요소임을 인식하고. 명확한 목표와 강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환경보건안전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한다.

-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·외 동종업계를 선도하는 환경보건안전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
- 우리는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한다.
-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킨다.
-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지역사회의 환경보건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.
- 우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,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소통한다.

본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, 우리는 모든 사업활동에 환경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.

2024. 1. 1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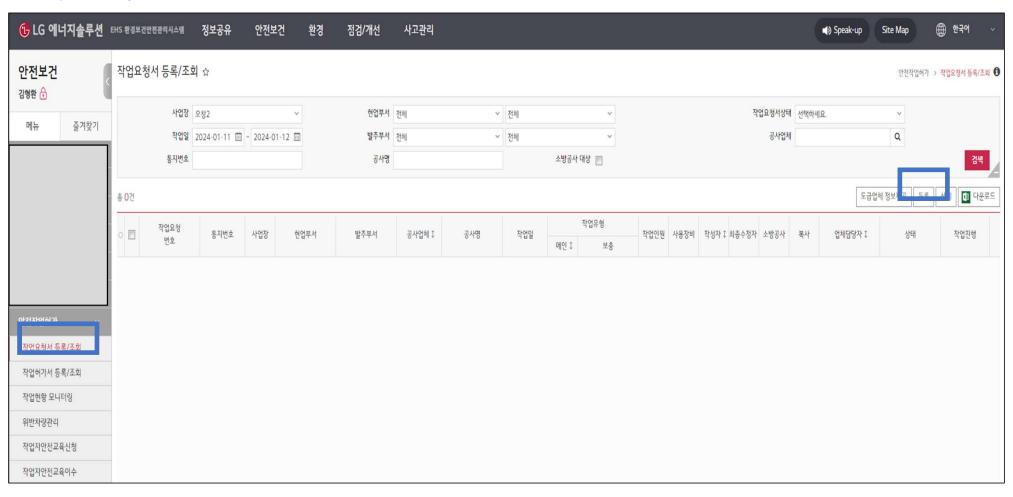
CPO MP extrem 2 3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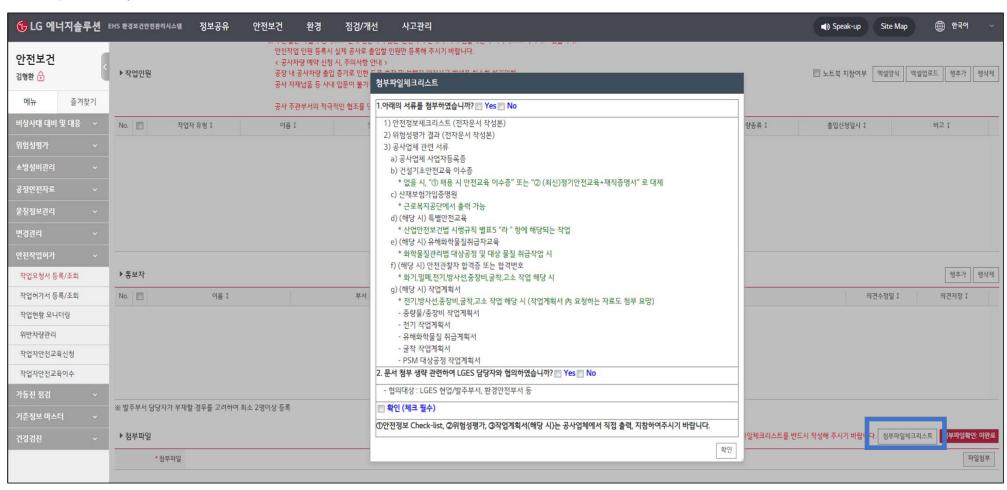
I. 안전작업허가서

Contents

- 1. 작업요청서
- 2. 작업허가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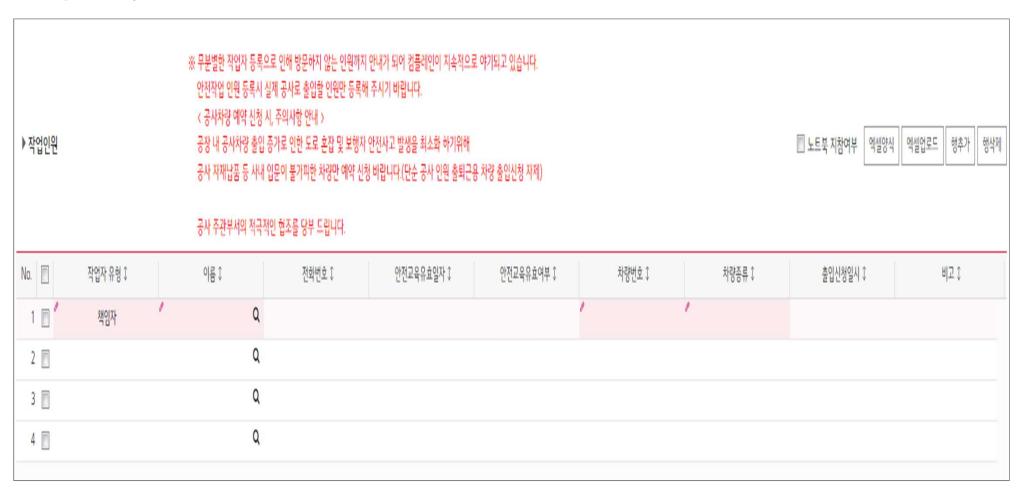


1) 작업요청서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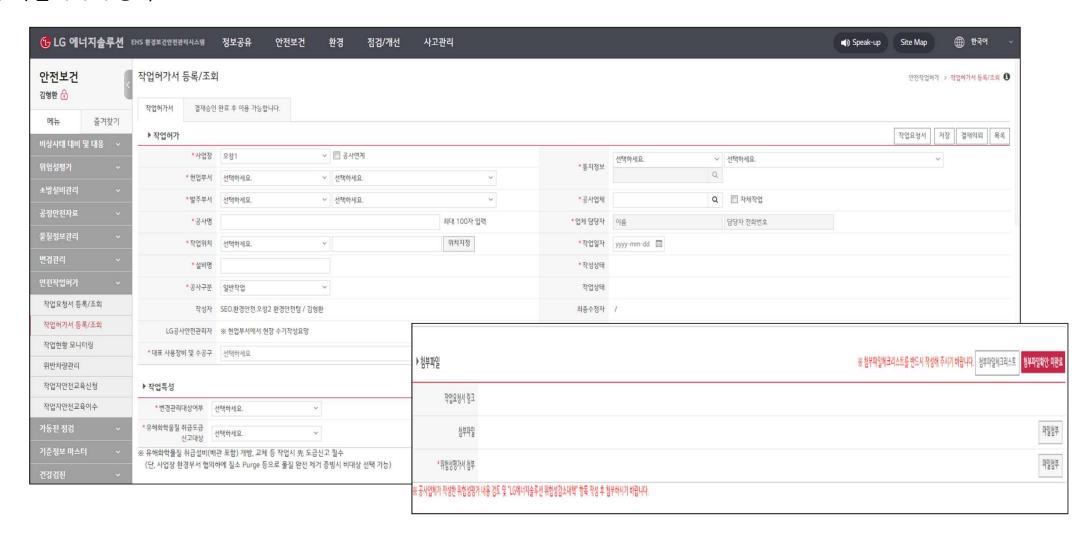
첨부파일체크리스트

1.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였습니까? 🔲 Yes 🗎 No

- 1) 안전정보체크리스트 (전자문서 작성본)
- 2) 위험성평가 결과 (전자문서 작성본)
- 3) 공사업체 관련 서류
 - a)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
 - b)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
 - * 없을 시, "① 채용 시 안전교육 이수증" 또는 "② (최신)정기안전교육+재직증명서" 로 대체
 - c) 산재보험가입증명원
 - * 근로복지공단에서 출력 가능
 - d) (해당 시) 특별안전교육
 - 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"라 " 항에 해당되는 작업
 - e) (해당 시) 유해화학물질취급자교육
 - * 화학물질관리법 대상공정 및 대상 물질 취급작업 시
 - f) (해당 시) 안전관찰자 합격증 또는 합격번호
 - * 화기,밀폐,전기,방사선,중장비,굴착,고소 작업 해당 시
 - g) (해당 시) 작업계획서
 - * 전기,방사선,중장비,굴착,고소 작업 해당 시 (작업계획서 內 요청하는 자료도 첨부 요망)
 - 중량물/중장비 작업계획서
 - 전기 작업계획서
 - 유해화학물질 취급계획서
 - 굴착 작업계획서
 - PSM 대상공정 작업계획서



2) 작업허가서 등록



Ⅱ. 위험성평가

Contents

- 1. 위험성평가 개요
- 2. JSA 위험성평가 우수사례

1) 위험성평가 개요



1) 위험성평가 개요



공정 위험성평가

HAZOP K-PSR WHAT-IF

피해영향범위평가

ALOHA K-CA KOR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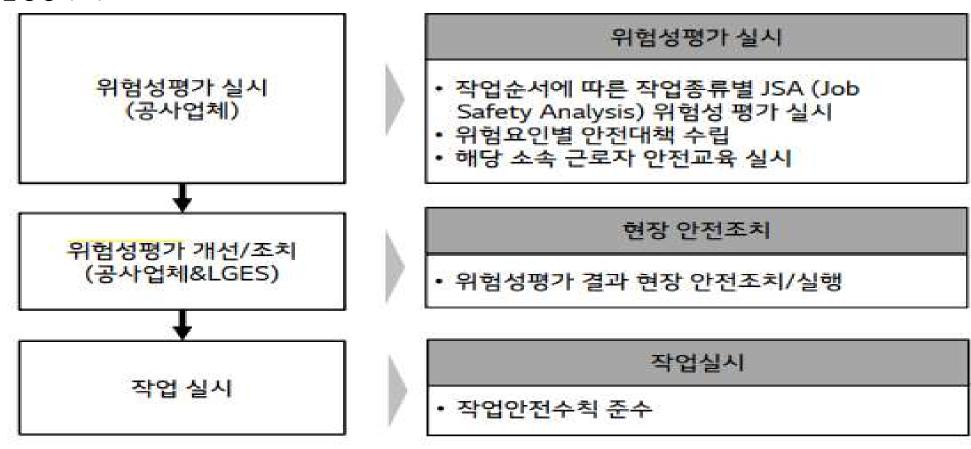
작업 위험성평가

JSA KRAS

화학물질 위험성평가

CHAM

1) 위험성평가 개요



2) JSA 위험성평가 우수사례

		공사도급언체		LG에너지솔루션
번호	작업절차	위험요인 또는 확인요청사항	위험성 감소대책	위험성 감소대책
1	사전 준비 작업	작업자 건강상태 미 확인으로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	관리자 또는 책임자 역할수행으로 작업전 작업자 건강사태 확인	TBM 내용 확인
		기본 안전보호구 미 착용으로 안전사고 발생	기본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(안전모, 안전화, 각반)	안전보호구 준비 확인
		당일 사용공구의 상태불량으로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	전선류(피복벗겨짐), 비산차단막, 기타 공구류 상태 확인	공구안전검사 필증 확인
2	자재 및 공구류 하역작업	중량물 하역시 허리부상 발생	중량물 하역시 2인 이상 1조 작업	작업상태 확인
		자재 하역시 손 미끄럼발생으로 안전사고 발생	안전장갑 착용 후 하역실시	안전보호구 착용 확인
		공구 하역시 공구류 미 고정으로 공구에 의한 충돌발생	공구 하역시 공구의 고정상태 확인 후 하역실시	고정상태 확인
		직접하역시 주변작업구획 미 설정으로 보행자 충돌사고	차량의 주변의 작업구획 설정	작업구획 설정 확인
3	화학세관 및 기계세관	MSDS 현장 미비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연	MSDS 현장 비치 (세관제(A1-500))	MSDS 현장비치 확인 (세관제(A1-500))
		기계 세관 시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 짐	바닥 물기 제거 후 작업	바닥 물기 확인
		개인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아전사고 발생	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(보안경 및 방독마 스크)	보호구 착용 확인
4	작업종료	현장 청소 시 먼지, 분진 등 흡입으로 작업자 호흡기 위험	흡입 방지를 위한 방진마스크 착용하고 청소 실시	보호구 착용 확인
		자재 및 폐기물 방치로 인한 작업자 충돌 및 전도 위험	자재/공구류 확인 또는 보관구역 설정하고 자재실명제 작성	보관구역 상태 및 현장 정리정돈 확인
			폐기물은 직접 반출 또는 지정된 폐기물 보관소에 버림	폐기물 상태 확인
		공구류 또는 폐기물 방치로 인한 작업자 충돌 및 전도 위험	폐기물은 직접 반출 또는 지정된 폐기물 보관소에 버림	폐기물 상태 확인

Ⅲ. 작업복장 및 보호구

Contents 1. 작업복장 및 보호구

■ 현장 작업자 (건설, 철골작업, 가설물 설치·해체작업)



- ▶ 근무복 : 긴팔/긴바지
- ▶ 조끼 : 업체명 표시
- ▶ 안전모 : 흰색
 - 흰색 (업체명 표기)
 - 보안경 내-외장형
- ▶ 안전모 띠 : 형광색
- ▶ 안전벨트 : 그네식
- ▶ 안전화
- ▶ 각반
- ▶ 무전기
- ▶ 완장
- 현장소장/안전관리자 필수
- 일반작업자 불필요

■ 클린룸 / 드라이룸 작업자



- ▶ 클린룸 작업복
 - 방진복 (상의/하의)
 - 방진모
 - 방진마스크
 - 방진장갑
- 방진화
- ▶ 조끼 : 뒤에 업체명 표시
- ▶ 안전모
 - 흰색 (업체명 표기)
 - 보안경 내장형
- ▶ 안전모 띠 : 형광색
- ▶ 안전벨트 : 그네식

(고소작업에 한해 착용)

■ 화학물질 작업자



- ▶ 내화학 보호구 착용
 - 내산복(상의/하의)
 - 내산장갑
 - 내화학장화
 - 안면보호구(방독마스크 등)
- ▶ 안전모
 - 흰색 (업체명 표기)
 - 보안경 내장형
- ▶ 안전모 띠 : 형광색

■ 정전작업 작업자







- ▶ 전기 감지기 착용(손목)
- ▶ 조끼 : 업체명 표기
- ▶ 안전모
- 흰색 (업체명 표기)
- 보안경 내장형
- 후레쉬 (안전모 부착형)
- ▶ 안전모 띠 : 형광색
- ▶ 안전벨트 : 그네식
- ▶ 안전화
- ▶ 각반

■ 신호수 / 화재감시자



- ▶ 근무복 : 적색 조끼
- 신호수 / 화재감시자 표기
- ▶ 안전모
 - 적색 (업체명 표기)
- 보안경 내장형
- ▶ 안전모 띠 : 형광색
- ▶ 안전화
- ▶ 각반
- ▶ (추가) 신호수 : 신호봉 / 호각
- ▶ (추가) 화재감시자 : 방연장비 세트
 - * "OPS 작업종류-화기-화재감시자" 참조

IV. 작업안전수칙

Contents

- 1. 화기작업 (화재감시자)
- 2. 밀폐작업 (밀폐공간 감시인)
- 3. 중장비작업 (신호수)
- 4. 고소작업
- 5. 연구실안전작업
- 6. 작업중지사항
- 7. 위반에 따른 페널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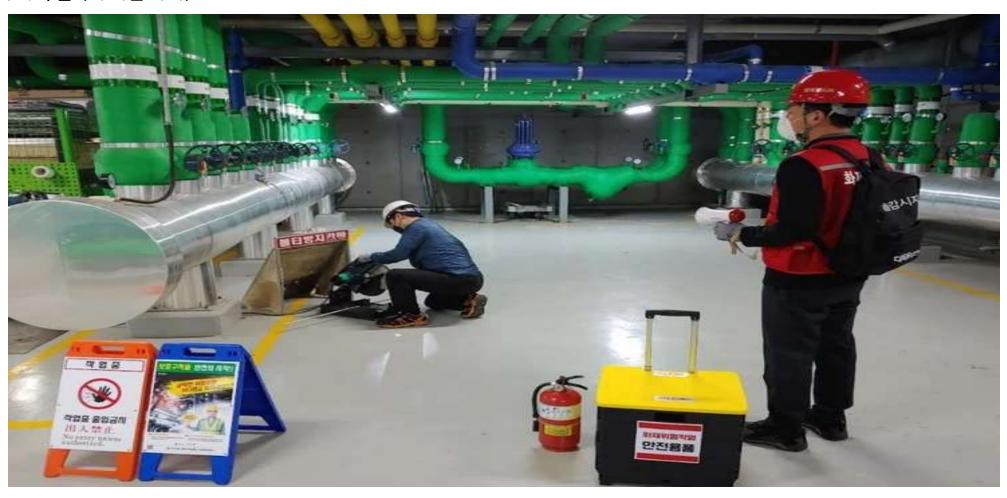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구분	че
1) 소화기 비치	- 발화원 5m 이내 소화기 비치 (3.3kg 2개 이상) - 발화원 25m 이내 화재진압장치(소화전/스프링클러 등) 존재 및 작동여부 확인, 작동방법 숙지
2) 불티비산방지포 설치	- 불꽃이 판넬/설비/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 - 협소구간 발생 시, 용접우산 및 불티포집 Tool 사용 - 불티비산방지포 재질 : 직물 TYPE 탄화포, 버미글라스, 버미실리카, 카미드, 슈퍼카본, 머리크로스, 버미가드, 카본펠트, 알텍스, 케이코팅포, 에스실리 콘코팅포, 실리콘 코팅포, 불티방염포 SBL
3) 인화성/가연성 물질 격리	- 11m 이내 인화성/가연성물질 제거 (제거 불가능할 시, 불티비산방지포 등 활용하여 완전 격리 후, LG공사안전관리자가 확인)
4) 가연성/인화성 가스농도 측정	- 기 준 : 인화성가스 : 0% / 일산화탄소 : 30ppm 미만 / 황화수소 : 10ppm미만 *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및 조치 - 방 법 : 공사업체 관리감독자가 11m 內 ¹⁾ 설비/배관, ²⁾ 작업공간, ³⁾ 화학물질-가스 잔존예상공간 등 측정 [주기 : 작업 전 / 휴식 후 / 식사 후 / 종료 후] - 제 외 : 전면이 모두 옥외로 개방된 곳에서, 주변 화학물질-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설비와 배관이 없는 경우는 측정 제외
5) 화재감시자 배치	- "OPS 작업종류-화기-화재감시자" 참조하여 배치 (화재감시자 부재 시 작업불가)
6) (중요) 교류아크용접기 / 산소절단기 금지 7) (중요) 17시 이후 작업금지	-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, 품의 등 공식문서를 통해,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합의 - 현업/발주부서 담당 결재 후, 환경안전부서에 송부 *필수포함사항: 공사명 / 공사목적(특수 사유) / 작업종료예정시간 / 안전조치계획 / 비상상황 시 조치방안 / LG공사안전관리자-공사안전관리자

2) 밀폐공간작업 (밀폐공간 감시인)

밀폐공간 작업자 주요 안전기준

- ▷ 밀폐공간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작업 시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▷ 밀폐공간작업은 최소 2인 1조 구성으로 최대 50분 작업, 10분 이상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.
- ▷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은 통신장비(무전기 등)를 이용하여 작업현장 내·외부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수시로 연락을 취한다.
 - * 상호 간 연락주기는 최대 30분 간격을 원칙
- ▷ 밀폐공간 작업자 1명은 개인 휴대용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기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농도 저하 및 유해가스에 대하여 연속으로 측정하여야 한다.
- ▷ 밀폐공간 작업자는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기의 경보가 울리거나, 건강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밀폐공간에서 대피하여야 한다.

2) 밀폐공간작업 (밀폐공간 감시인)

밀폐공간 감시인 주요 안전기준

- ▷ 밀폐공간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작업 시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▷ 밀폐공간 작업수행 중 상주하며, 작업자의 안전확인을 하여야 한다.
- ▷ 작업자에게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방재센터와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.
- ▷ 밀폐공간 출입인원을 확인하고 작업시간을 관리한다.
- ▷ 감시인이 해당작업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, 불가피하게 이탈 시에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
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여 감시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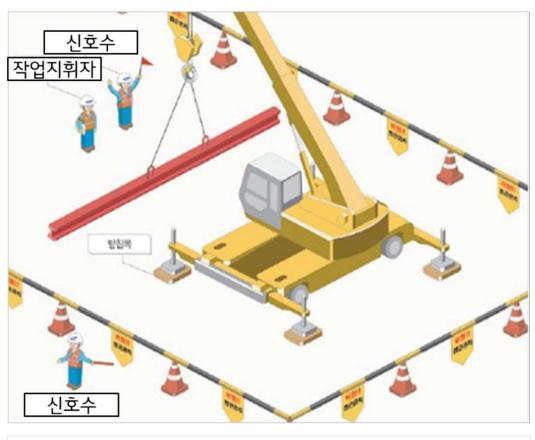
2) 밀폐공간작업 (밀폐공간 감시인)

밀폐공간 관리감독자 주요 안전기준

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자를 말한다.

- ▷ 작업자가 *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- ▷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.
- ▷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외부 배치하고 내부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.
- ▷ 작업허가서를 게시하고 허가된 작업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.
- ▷ 작업자가 밀폐공간 안전관리 내규를 준수하도록 관리한다.
- *안전보호장비 ① 유해가스농도 측정기, 산소농도 측정기(1회/연 이상 외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)
- ② 급기팬, 배기팬, 덕트 등 환기장치 ③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Set ④ 삼각구조대 ⑤ 전동윈치
- ⑥ 구명로프 ⑦ 그네식 안전대 ⑧ 무전기/휴대용 랜턴

3) 중장비작업 (신호수)



작업지휘자 배치, 신호수 배치, 작업구획 등

4) 고소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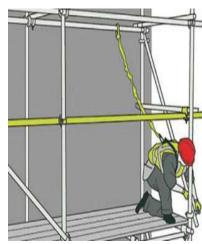
1. 고소작업 의 정의

- 추락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 진행하는 작업
- 별도의 높이기준은 없으며, 작업 시 추락 위험존재 여부로 판정해야 함
-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있는 장비
 (고소리프트, 비계, 틀비계)를 최우선으로 선택
- 작업발판 및 난간을 기준에 따라 설치 후 작업을 수행. 작업발판 및 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거나, 안전대나 구명줄을 착용.
- 2. 고소작업 안전수칙
- 안전대는 견고한 안전대 걸이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착용
- 2인 1조로 작업
- 그 외 추락방지조치를 위해, 공사안전 OPS의 기준 준수
 - 안전난간/작업발판 사다리
 - 안전대 고소작업대
 - 고정식 비계 생명줄(구명줄)
 - 이동식 비계 안전블럭
 - 말비계









연구환경 특성별 안전작업 유의사항

5) 연구실안전작업

□ 다양한 연구환경 내 작업자들의 안전한 작업공사를 위해, 안전정보 제공으로 연구환경에 따른 작업안전성 확보

① 유해물질 비치 공간 내 작업시

- 유해물질 등 작업공간 내 존재하는 물질의 MSDS 확인
- 적합한 개인보호구 및 대응방법 사전 숙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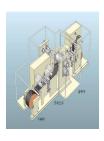


② 폭발위험장소 내 작업시

- 가연물, 배터리,인화성 가스등 폭발위험 공간 위험성 평가 확인
- 국소배기장치 실험 중지등 사전 점검







연구소 특성

③ 국소배기 장치 등 환기 설비 작업시

- 후드,국소배기내 공사시 인화성 가스농도 측정
- 단독 후드/ 국소배기장치 실험 중지







④ 연구환경에 따른 공사 작업시

- -실험실내 화학물질 저장소,드라이룸등 구역내 안전보호구 착용
- 화학물질 보관 및 금수성 물질 취급장소 공사담당자 확인







6) 작업중지사항: 급박한 위험상황이 발견된 경우

급박한 위험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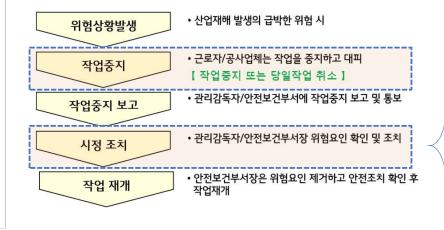
- 1)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,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
- 2) 비계, 거푸집,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
- 3) 토사,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
- 4) 가연성·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·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
- 5) 유해·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,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
- 6)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
- 7)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
- 8)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확인된 경우
- 9)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
- 10) 작업장소에서 화재·폭발, 토사·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

1) 위험상황이 발견된 해당공정 및 작업 (공사의 경우, 공사업체 수행작업)

작업중지의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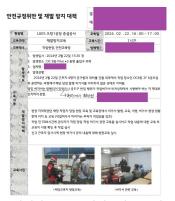
- 2) 위험상황이 발견된 장비
- 3)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부서장 판단으로 작업중지 범위조정 가능

작업중지의 해제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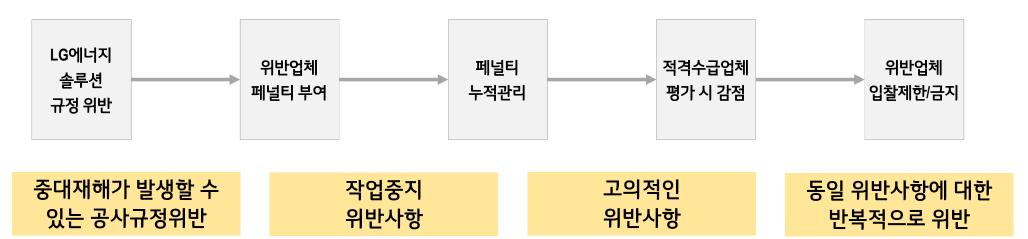


【 발생경위서 및 재발방지 대책서 】



【작업자 교육 & 업체패널티 부여 】

7) 위반에 따른 페널티



- ✓ 가연성,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
- ✓ 산소농도측정 없이 밀폐공간 출입
- ✓ 보호구 미착용

- ✓ 음주상태로 작업참여
- ✓ 허가서 대필, 교육서명 대필
- ✓ LG에너지솔루션의 안전지도 불응